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17 선고 2022나307452 판결 [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17 선고 2022나307452 판결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2. 10 선고 2020가단3067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, 이기광, 배종수

변론종결 2022. 11. 30.

판결선고 2023. 3. 17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2. 10. 선고 2020가단30671 판결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의적으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D[E생] 명의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구미등기소 2019. 5. 16. 접수 제23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D[E생] 명의의 각 1/2 지분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2019. 5. 20.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,45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. 5. 20.부터 제1심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바꾸고,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‘2. 추가 판단’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

원고들은 J이 망인을 만나기 전 피고로부터 받은 망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, 망인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대한 승낙을 얻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, 제1심 증인 J의 증언, 이 법원의 법무사 N에 대한

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법무사 직원인 J은 2019. 5. 15.경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망인을 만나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, 위와 같은 망인의 의사표시에는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.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증여에 의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주장·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는데(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고), 을 제24호증의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구미시 O 답 602평, 구미시 P 답 2,003㎡의 토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지분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들은 망인 소유의 스타렉스, 포터, 에쿠스 등 9대의 차량, 망인의 에쿠스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금 75돈,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통장계좌에 2억 5,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천, 판사 이경한, 판사 안정현